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39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정희용·고동진·김선교

김태호 · 김상훈 · 우재준

박덕흠 · 신성범 · 김 건

이종배 · 임이자 · 박대출

이양수 · 김기현 · 유상범

김승수 · 박준태 · 송언석

김예지 · 김위상 · 한지아

강명구 · 조지연 · 이인선

서천호 · 김성원 · 조승화

서명옥 • 백종헌 • 박수영

이종욱 • 이만희 • 박충권

서지영 · 최은석 · 박성민

정연욱 • 김정재 • 강대식

성일종 • 박형수 • 김종양

강승규 • 구자근 • 정동만

김상욱 • 김석기 • 윤영석

이철규 · 정점식 의원

(50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

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 날·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물가 상승,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,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 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·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 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 3항제2호). 법률 제 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"를 "그 가액 범위를 별 도로 정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	③
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	
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	
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	
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	2
•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	
제공되는 음식물 · 경조사비 ·	
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	
등. 다만, 선물 중 「농수산물	
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	
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	
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	
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	
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	
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)	<u>⊐</u>
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	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
•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	<u>있다</u> .

<u>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</u> <u>한다</u>.

3. ~ 8. (생 략)

④・⑤ (생 략)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